
서울고등법원 2003. 8. 28 선고 2002누1485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에관한행정 처분취소]

전 문

원 고 사단법인 제▣▣△광협회 ○○시 ○○동대표자 이사 이×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강♣♣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재현, 김종철, 김세한, 고현중

변 론 종 결 2003. 6. 12.

판 결 선 고 2003. 8. 28

주 문

1. 피고가 2002.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중, 1. 항 기재 시정명령과 3.항 기재 공표명령 중 1.항 기재 행위에 대한 공표명령 부분 및 4.항 기재 과징금 납부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2.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제주지역의 450개 관광사업자들이 상호간의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1962. 2. 22.에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1997. 11. 9.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한다는 이유로 유람선 등 5개 업종 4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관광상품의 판매가격과 송객수수료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각 분과위원회 별로 송객수수료율 등을 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997. 12. 10. 원고 협회 회의실에서 농원업 분과위원장인 민@원 등 9개 분과위원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국내관광분야 분과위원장단회의를 통하여 별지 '판매가격 및 송객수수료율 협약 현황' 기재와 같이 관광상품의 판매가격 및 송객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결의하고 참석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결의내용이 기재된 협약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1997. 12. 24. 위 협약을 관련 회원사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1. 6. 29. 원고 협회 회의실에서 국내여행업분과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공항안내소를 이용한 여행객들에게 판매하는 비예약관광상품에 대하여 부실관광 및 요금덤핑을 예방한다는 사유로 유료관광지 입장료를 1인당 15,000원 이상이 되도록 여행상품을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비예약순번 변경, 관광상품 홍보제외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날 이를 관련 회원사들에게 통보하여 각 회원사가 취급하고 있는 비예약관광상품의 내용을 원고 사무국으로 제출한 다음 판매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1) 관광상품에 대한 가격결정은 개별사업자가 스스로의 영업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국내관광분야 분과위원장단회의를 통하여 관광상품가격 및 송객수수료율을 결정하여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준수하도록 통보한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이를 '경쟁제한행위'라고 한다)에 해당되므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고, (2) 개별사업자의 사업활동은 스스로의 영업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국내여행분과위원회 정기총회를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이 판매하는 비예약관광상품에 대하여 유료관광지 입장료를 1인당 15,000원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고 이를 원고에게 제출한 후 판매하도록 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하 이를 '사업활동제한행위'라고 한다)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2. 4. 11. 원고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7조, 제28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제1소회의 의결 제2002-082호로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성 여부

원고는 회원을 반드시 제주지역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자에 한정하지 않고 제주관광사업의 성장·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에게 폭넓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 현재의 회원은 제주지역 450개 관광사업자 이외에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고의 주요사업내용은 관광진흥법 제4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업무내용의 범위 내에서 정관에 의해 정하여진 것으로 제주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각종 사업

을 전개하고 있고, 원고의 수입예산 중 80%에 가까운 예산이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외형상으로는 사업자단체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행정기관의 통제를 받는 하부조직과 같은 지위에서 행정기관과 사업자, 관광객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공적 성격이 강한 비영리사단법인일 뿐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

(가) 관광상품의 가격은 오로지 그 상품의 질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송객수수료는 관광상품 자체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어 관광상품 자체의 본래 가격을 변경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원고가 국내관광분야 분과위원단장회의를 통하여 관광상품 판매가격 및 송객수수료율을 하향조정하기로 결의한 것은 관광상품 자체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기 위한 협의라기 보다는 관광상품에 내재된 부당한 송객수수료를 줄임으로서 관광소비자를 보호하고 관광상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의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송객수수료율 하향조정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송객수수료율 등에 대한 협약은 제주지방검찰청이 주관하고 원고 회원사들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관광사범수사지도협의회의 결정에 의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인데, 위 행정지도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공적 성격의 비영리사단법인은 위와 같은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득이한 것이었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은 협약사항을 회원사들에게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고적 의미를 가진 것에 불과할 뿐 강제성을 가지지 않아 회원사들이 이에 따를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사업자의 영업방침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하였고, 결국 모든 사업자들이 이에 일률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바람에 위 협약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3)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일부 여행사들이 관광객들에게 비예약관광상품을 판매하면서 지나치게 저렴한 관광요금을 받고 무료관광지를 중점적으로 관광시키는 등 저질의 관광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민원 및 불편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광상품의 질을 향상시켜 관광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

예약관광상품 판매시 유료관광지 입장료를 1인당 15,000원 이상이 되도록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성원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가사 원고의 위 각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28조 제1항의 과징금 부과 규정은 임의적 규정에 불과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행위들은 모두 정관에 정한 목적과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의 위 각 행위는 구성사업자 중 어느 특정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다른 구성사업자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한 행위가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없는 데다가 관광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였던 점, 원고는 예산의 8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적 성격이 강한 비영리사단법인인 점, 원고의 위 각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자유경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제27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범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 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판 단

(1)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성 여부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정관(갑 제1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제주관광산업의 성장·발전과 회원업체의 사업발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2조), 관광객 유치촉진(제4조 제1호), 관광상품개발 및 제공(제4조 제2호) 등을 그 업무로 하고 있으며, 총회 및 이사회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와는 별개의 의사결정을 하는 활동주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기본적으로 그 회원사들인 제주지역 450개 관광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회원 중 제주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업무내용이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 일부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등 원고가 공적 성격이 강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1997. 11. 9.경 제주도 내에서 유람선업, 토산품점, 관광농원, 식당 등을 경영하는 대부분의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안내하는 안내원 및 운전기사들에게 송객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고 그 수수료 금액이 관광객들의 관광요금에 부당하게 전가되는 관광부조리가 자주 발생하자 이와 같은 불법적인 관광사례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주지방검찰청 및 제주도청과 합동으로 수수료 지급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광시설 이용료나 상품 판매가격의 30% 내지 50%에 이르는 금액이 안내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②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1997. 10.경부터 검찰, 경찰, 행정기관 및 원고의 회원인 관광사업자들로 구성된 관광사범수사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제주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월 1회씩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제주도내 관광업종 및 업소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협의하여 왔는데, 1997. 11. 21. 제주지방검찰청 회의실에서 담당검사와 도, 시, 군의 관광업무 담당자, 경찰관계자, 원고의 회원 등이 모여 제주도내 관광업계의 송객수수료 부당지급실태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원고 협회 소속의 국내관광관련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송객수수료 지급율 및 이용요금을 객관성 있게 하향조정하여 1998. 1. 1.부터 조정된 수수료율 및 인하한 이용요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1997. 11. 23.부터 12. 4.까지 사이에 각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업종별 상품 판매요금 인하 및 수수료율을 별지 '판매가격 및 송객수수료율 협약 현황' 기재와 같이 하향조정하기로 하는 한편, 1997. 11. 27. 업종별 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위 관광사범수사지도협의회 결과에 따라 업종별 분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과다한 수수료 지급관행을 타파하고 조정된 수수료율을 준수하기로 결의하였다.

④ 원고는 1997. 12. 10. 국내관광분야 분과위원장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각 업종별로 결의 또는 협의된 사항을 적극 준수하고 자율적으로 관련업종 사이에 같은 내용의 협약을 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23. 관련 회원사들에 대하여 1998. 1. 1.부터 자체적으로 하향조정된 관광상품 판매요금 과 수수료율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판단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제주도 내의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안내하는 안내원 및 운전자들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는 실질적으로 관광요금에 전가되어 관광

객들이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관광상품의 구입대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자단체인 원고의 송객수수료율 변경은 외형적으로는 관광상품 판매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송객수수료가 사실상 관광상품의 판매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송객수수료는 관광상품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 확보하기 위한 과다경쟁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의 성격이 강한 점에 비추어 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가격결정 또는 변경행위라기 보다는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적 규제로서의 의미를 더 크게 가지고 있어 이를 그 주요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인 원고의 고유업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송객수수료율 하향조정은 근본적으로 그 구성원인 회원사들로 하여금 송객수수료가 포함된 관광상품의 가격과 관련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관광객들의 관광요금에 부당하게 전가되는 송객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관광부조리를 개선함으로써 관광객을 보호하고 관광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점, 제주도 관광사범수사지도협의회에서 원고 등 관광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송객수수료율을 객관성 있게 조정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원고가 업종별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와 같이 송객수수료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송객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제주도의 관광질서를 개선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소비자인 관광객들에게도 관광상품 가격인하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송객수수료율 하향조정은 관광상품의 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함으로써 구성원인 회원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그 위반을 전제로 한 공표명령 부분은 위법하다.

(3)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제3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사업자단체활동지침'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가격, 생산·출고·판매량, 판매조건 및 거래조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설비의 신설·증설 및 장비의 도입, 사업의 내용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관광상품에 대한 가격결정은 개별사업자가 스스로의 영업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사항으로서 사업자단체가 그 구성사업자들에 대하여 상품가격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명백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여행업 분과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비예약관광상품에 대하여 반드시 유료관광지 입장료를 1인당 15,000원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그 가격을 제한하는 한편, 그 각 회원사들로 하여금 취급하고 있는 비예약관광상품의 내용을 원고 사무국으로 제출한 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비예약순번 변경, 관광상품 홍보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를 통보한 행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행위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제한행위의 내용과 정도, 제재조치 및 원고의 회원사들에 대한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단체인 원고가 구성원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그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비예약관광상품은 아무런 예약 없이 제주에 온 관광객을 상대로 하여 원고의 공항안내소에서 관광안내를 의뢰받은 상품으로서 기본적으로 구성사업자들의 고유의 상품이 아니라 원고의 고유상품이나 다만 이를 직접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성사업자들에게 그 판매를 대행하게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판매할 구성사업자를 모집한 다음 그 판매를 위한 배정순번을 정하고 상품가격의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경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관광객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예약관광상품이 구성사업자들의 고유상품이 아니라 원고의 고유상품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비예약관광상품이 원고의 고유상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판매를 구성사업자들에게 대행하도록 한 이상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의 명백한 근거 없이 그 가격을 제한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일정한 제재조치까지 동원하여 그 준수를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는 관광상품의 가격에 대한 구성사업자들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은 비예약관광상품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관하여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송객수수료를

조정행위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이를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위 부과처분 중 위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그 부과 여부 및 그 액수의 결정 등이 피고가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나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그 전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2.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중, 1.항 기재 시정명령과 3.항 기재 공표명령 중 1.항 기재 행위에 대한 공표명령 부분 및 4.항 기재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여 이를 각 취소하고, 2.항 기재 시정명령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애 판사 성지용 판사 고영구

시정명령 등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의 관광상품가격 및 송객수수료율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제주지역 관광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비예약순번 추천권을 이용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유료관광지입장료가 포함된 비예약관광상품을 구성하여 피심인에게 제출 후 판매토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및 2.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제주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奎版)에 3단 × 10cm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및 활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가. 과징금액 : 22,200천원
 -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끝.

가격 및 송객수수료를 협약 현황

업종명		판매가격		수수료율					
		변경전	변경후	계	여행사	안내원	운전사	비고	
농원 분과	농원	선인장액상	40,000	35,000	25	10	7.5	7.5	판매금액
		선인장효소	35,000	~					
		신선초효소	35,000	30,000					
	성읍	오미자	35,000	30,000	25	10	7.5	7.5	"
		꿀	35,000						
		신선초효소	35,000						
		영지효소	35,000						
유람선업	장거리	15,000	13,500	25	10	7.5	7.5	승선료	
	단거리	10,000	9,000						
	단거리	8,000	7,000						
승마장업	11,000		10,000	25	10	7.5	7.5	승마료	
기념품업	총 1,500여 종류		10%인하	25	10	7.5	7.5	판매금액	
관광지업	신고요금			10	10	-	-	입장료	
사진업	250,000 ~ 350,000			25	25	-	-	제작비	
비디오업	120,000 ~ 150,000			25	25	-	-	제작비	